

2021년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(2차) 지원 조건

1. 기획취재 신청

- 가. 현재 취재 및 보도를 준비 중인 주제에 대해서만 지원한다.
- 나. 선정된 기획취재의 주제, 계획, 내용과 범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.
- 다. 주제 및 예산 변경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재단-언론사 간 모든 협의는 공문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휘된다.

2. 예산 편성

- 가. 예산은 “[별표1]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표” 및 “[별표2] 국외여비지급표”에 따라 편성한다.
- 나. 예산 항목·세부항목 집행한도 기준을 초과해 편성할 수 없다.
- 다. 국외 취재 시 여행사에 항공료, 숙박료, 열차·선박료, 식비, 통역비를 일괄 위탁할 수 있다.
- 라. 지원대상사/지원대상사 임직원 명의 사업체/지원대상사의 자회사 및 관계사로의 사업비 편성 및 지출은 일체 불인정 처리된다. 지원대상사/지원대상사 임직원 명의 사업체/지원대상사의 자회사 및 관계사 소속 직원 대상 사업비 편성 및 지출 또한 불인정 처리된다.
- 마. 국외 취재 예산 편성 및 집행, 정산 시 환율은 편의상 1,150원을 적용한다.
- 바. 자부담(언론사 부담 금액)은 총 사업비(기금+언론사 부담 금액)의 최소 10%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.
- 사. 자부담 예산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이 편성할 수 있다.
 - ①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항목 예산 (단, 국내/국외여비의 일비 및 식비의 경우 자부담일지라도 규정 단가 준수 필요)
 - ② 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중 해당 취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

3.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

- 가. 사업 결과물(취재보도물)에는 제작지원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.
- 가-1. (단편) 각 보도물 종료 시 방송 화면에 제작지원 자막을 고지해야 한다.
 - 화면 하단 또는 중앙 위치에 ‘제작지원 : 한국언론진흥재단 ’ 고지
- 가-2. (장편) 프로그램 종료 시 방송 화면에 제작지원 자막을 고지해야 한다.
 - 화면 하단 또는 중앙 위치에 전체화면의 1/4 크기로 2초 이상 ‘제작지원 : 한국언론진흥재단 ’ 고지
- 가-3. (장/단편) 라디오 보도 시, 보도 시작 전 또는 보도 완료 후 “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.” 언급
- 나. 사업 계획서상 취재보도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, 미준수시 지원금 일부가 반환 조치될 수 있다. 계획 변경 필요시 사전에 재단과 협의해야 한다.
- 다. 경비 집행은 “[별표1] 예산 편성 및 경비집행 기준”에 따른다. 항목별 집행한도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, 기준을 초과한 집행액은 불인정 처리된다.

- 라. 경비 집행 방법은 지원대상사 명의의 **법인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만 인정**된다. 이외의 수단을 통해 집행한 경비는 정산 시 불인정 처리된다.
- 마. **경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필수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**해야 한다. 사업 규정에 명시된 증빙 서류 누락 시 해당 집행 건은 불인정 처리된다. (지원대상사의 회계규정상 원본이 필요한 경우 사본으로 제출하되 ‘원본대조필’ 날인 후 제출)
- 바. **지원대상사의 임·직원 명의 사업체로의 사업비 지출은 불인정 처리된다. 자회사로의 사업비 지출도 불인정 처리된다.**
- 사. 국외 취재 여행사 위탁의 경우 언론사는 여행사로부터 견적서 및 청구서를 받고, 청구 금액을 여행사에 계좌 이체한다. 언론사는 정산 시 △출장명령서(출장자명, 출장기간, 출장지역(국가/도시), 출장금액 산출내역 등 포함) △여행사 발급 견적서 △여행사 발급 청구서 및 거래내역서, 세금계산서 △항공권 내역서(e티켓) △계좌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.
- 아. 국외여비의 경우 환율은 편익상 1,150원을 적용한다. 카드 집행 건의 경우 환가료를 포함한 카드사 최종 청구액을 기준으로 한다.

4. 사업 마감 및 정산

- 가. **2021년 11월 15일까지 보도 완료 및 사업비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와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** 기한 미 준수 시, 사용한 사업비 전액이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며, 재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- 나. 선정된 기획취재 지원대상사는 **계획서에 명시한 보도 시기, 보도 방식, 보도 횟수 등을 준수**하여 보도하고, **최종 보도 후 2주 이내 결과물을 원본 파일 형식(영상 파일)**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. 계획서상의 보도 횟수 등 기준 미준수 시 지원금의 일부 회입이 가능하다.
- 다. 최종 정산 시에는 불인정금액(규정 초과 금액 등)을 제외한 실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자부담 비율을 계산한다. 자부담 금액은 실인정 사업비(지원금+언론사 부담 금액)의 최소 10% 이상이어야 한다. 자부담 비율 미준수 시 자부담 비율에 부족한 금액만큼 지원금을 삭감한다.

5. 지원 중단 및 반환

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반환조치 한다.

- 가. 명예훼손, 음란물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
- 나. 기획취재 활동을 임의로 중단, 또는 폐지한 경우
- 다. 지원 대상 팀이 기획취재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
- 마.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 받았을 경우
- 바. 사업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

6. 기타사항

- 가. 재단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- 나. 기획취재물의 저작권은 당 재단에 귀속하며 기획취재팀의 요청 시 당 재단과 협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. 사업 결과물(취재보도물)은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.

- 다. 기획취재를 수행하는 자가 지원금을 집행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재단은 사업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한다. 기준 및 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.
- 라. 재단은 기획보도물을 재단의 사업 성과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선정된 지원대상사는 이에 대한 재단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.
- 마. 재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며, 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.